

**아주대학교 원천관, 동관, 화공실험동, 성호관
냉난방설비(EHP) 개선공사
/ 과업지시서**



2024. 11.

**아주대학교
시설팀**

1. 일반사항

1. 공사명 : 아주대학교 원천관, 동관, 화공실험동, 성호관 냉난방설비(EHP) 개선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 1) 원천관 (호실, 복도)
- 2) 원천관 강당
- 3) 동관 (호실)
- 4) 화공실험동 (호실)
- 5) 성호관 (복도)

※ 자세한 설치위치, 장비타입, 용량 등은 ‘설계도면’ 참조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주요 공사내용

- 1) 기존 냉난방기기 및 부속설비 철거작업(기존 장비, 배관 등 철거포함)
- 2) 신규 냉난방기(EHP) 실내기 및 실외기 납품 및 설치
-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 설치 및 보온공사
- 4) 냉매 배관 커버 제작 설치 및 보온공사
- 5) 자동제어 통신 설치 및 연결
- 6) 전원공사

※ 분전반(차단기) ~ 실외기 및 실내기 전원공사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진행

- 7) 장비 시운전

3.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현장설명회 미실시)

나. 낙찰자 결정 : 총액 최저가 입찰

다.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3) 입찰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 지역인 업체

5) 2024년도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업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급의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제출

6) 공고일 기준 LG전자에서 발급받은 ‘**물품공급확약서**’ 제출 가능업체

7) LG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으로 인증한 업체

※ LG전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제출

8)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대학(교)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중 1개소에서 발주한 냉난방설비(EHP) 설치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 기준 : 단일 건으로 4억원 이상 (실적증명서 제출)

4. 공사 일반사항

가. 제작 및 설치 승인

-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 3) 공사 완료 후에 준공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사항 : 도면파일 USB 1EA, 설치 전·후 사진 (모든 호실제출)

나. 사용자재 및 기기

-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에 반입 전 감독자에게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한다. 이 때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자재는 KS 제품중 A종, 1급 신제품으로 또는 제조사에서 공식인증한 정품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 3) 설계 도면상의 제품이 장비 제조사의 사유에 따라 단종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없이 기존 사양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한다.
- 4) 모든 자재는 신규제품이어야 하며, 사용하였던 자재의 재사용은 절대로 금한다.

다. 시공 유의사항

- 1) 모든 공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제조사의 설치기준’ 을 다음으로 따른다.
-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한다.
- 3) 코아 작업 및 설치에 관련된 일체 행위에 따른 전기, 통신, 방송, 인터넷 전선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발견 시 발주처 담당에게 연락을 취한다.

- 4) 설치 검수시, 설치된 물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 5) 기존 설치된 시설물의 임의적 변경 또는 파손을 절대로 금한다.
- 6)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호실의 보양을 철저히 진행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한다. (보양상태 사진촬영 및 제출 필수)
- 7) 배관 타공부위는 밀실하게 마감하여 외기 및 벌레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 현장관리 유의사항

- 1) 모든 제품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2) 모든 공사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세부작업 일정 및 소음,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3) 현장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해당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4)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5) 감독원이 지시하는 안전, 환경, 위생, 화재예방, 정리정돈, 공해방지 등의 현장관리상 보완해야 할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6) 작업완료 후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쓰레기를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 7) 공사기간에 나오는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8) 모든 제품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9) 모든 공사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세부작업 일정 및 소음,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 방법을 강구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10) 공사기간 중 현장대리인 1명 상주를 한다.
- 11) 본 공사 수행 중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12) 본 건물은 강의실, 행정실 등이 배정되어 있음. 따라서 학사일정에 따라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의 경우 공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13) 공사 진행 간 공사내용, 투입인원 등이 명기된 출력일보를 제출한다.
- 14) 공사기간 연장은 학사일정에 의하여 조정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5) 시공사의 불찰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준공검사 지연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 16) 재하도급은 불가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건설 기초 안전보건 이수 및 제조사 설치 자격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한다

5. 안전 관리사항

가. 근로자 안전

- 1) 교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전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각반 마스크 착용 필수
 -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가능

나. 현장 안전

- 1)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 화재 도난 부상 사망 기타 재해사고 등 는 시공자가 책임처리한다.
- 2) 시공자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차량 및 통행인의 이동 방해, 분진 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3) 시공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반드시 현장 주변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공사구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 4)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차량 및 인원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5)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재 정돈 상태를 점검 및 정돈하고, 현장내부는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 6)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의 현장 청소 및 이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 7) 용접 작업 등에 따른 화재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행한다.

II. 특기사항

1. 세부공사위치

건물명	설치장소	내용	비고
원천관	1~5층 일부호실	멀티, 싱글형 냉난방기 (천장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 자세한 용량 및 타입은 '설계도면' 참조	
	1~5층 복도		
	강당		강당은 바닥상치형, 스탠드형 조합으로 설치, 기존 방열기 및 배관 철거 포함
동관	1~3층 일부호실		
성호관	1~4층 복도		
화공실험동	1~2층 일부호실		

2. 시공 관련사항

1) 배관공사

- 공용부(복도)의 배관 보온재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규격보다 1단계 두꺼운 보온재를 시공한다.
- 외부 드레인배관은 지상층까지 하향배관하여 배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한다.
- 외부 냉매배관은 STS파이프 또는 PVC덕트 커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커버 마감재 선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배관 관통부위는 외기, 벌레 등의 침입이 없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기존 장비 철거에 따른 배관 관통 부위를 재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위도 마감하도록 한다.)

2) 실외기 설치공사

- 실외기 위치가 지상층(흙바닥) 또는 옥상층일 경우, 높이 200~250mm 이상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여 실외기 소음, 진동 및 침수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한다.
- 실외기 설치완료 후, 호실 명판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3) 실내기 설치공사

- 천장형, 스탠드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내기 대수당 유선리모컨 1개를 설치한다.
- 벽걸이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내기 대수당 무선 리모컨 1개를 납품한다.
- 원천관 강당의 경우, 바닥상치형 실내기 설치를 위하여 기존 방열기 및 연결배관의 철거를 포함한다.
(실내기 설치위치는 방열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 천장형 타입의 경우, 텍스의 절단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실내기마다 점검구를 설치한다. (탈착이 용이한 텍스 마감의 경우 제외)

4) 전원공사

구 분	실외기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연결	비고
싱글형 타입	전기공사 별도발주	-	
멀티형 타입	전기공사 별도발주	전기공사 별도발주	※실내기 전원연결은 '첫번째' 실내기까지만 전기공사에 포함.

※ 이외에 모든 전원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5) 자동제어공사

- 설치하는 모든 장비는 발주처에서 기존 사용 중인 TMS에 연동하여 중앙제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철거공사

- 철거공사와 관련한 모든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 철거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 (천장마감재 등)의 파손시, 복구공사를 포함한다.
- 철거된 장비는 외부반출이 불가하며, 발주처에서 지정한 위치에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7) 기타사항

- 공사가 진행되는 호실 내에 실험장비, 행정용기구, 사무용가구 등이 설치되어 설치에 간섭이 발생하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를 절대로 금지한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사 투입 최소 1주일 전에 감독자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이동조치를 받도록 한다.

(임의 이동 및 파손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공간은 사전에 실내보양, 바닥보양을 철저히 진행하고, 보양이 완료된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전 보양작업 미비에 따른 민원 및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수급자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특기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각각의 내용 중 표현이 불일치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찰일전 이의를 제기하여 명확한 공사 방법을 제시 받아야 하며 이의 제기 없이 공사 중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 사양 및 방법으로 공사비 증가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면 또는 시방 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건물의 준공 또는 기능 유지상 필요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법령의 준수

1)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타 일반시방은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발주처는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를 시공자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현장의 공사 중지를 수급자에게 요청하고, 관리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현장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즉시 교체한다.

III. 기타사항

1. 견적조건

가. 본교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도면,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측을 실시하고, 물량과 단가를 표시한 내역서를 제출한다.

- 내역서 작성 시, 모든 품목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작성한다.

- (실내기, 실외기, 배관류 설치 등에 대한 노무비 수량, 단가를 각각의 품목마다 별도로 입력할 것)
- 물량산출 및 단가산정 잘못은 인정치 않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음
- 제공된 도면을 참고하되, 반드시 현장실측 및 현장여건을 확인 후 견적해야 함. 실측오류 및 현장 여건 확인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없음. (지급된 도면은 견적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입찰완료 후에는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조치 한다.)

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내역에 포함하며, 공사 후 정산한다.

- 정산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 공사 및 정산완료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 학교 감사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정될 경우, 환수해야 함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증액) 계약이 가능함.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다. 물량 산출 및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은 없으며, 산출오류에 따른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현장정리 및 보양, 폐기물 처리, 준공청소까지 견적 포함

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내역에 포함하며, 추후정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바. 공사 및 정산완료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 학교 감사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정될 경우, 환수 조치

사. 공사 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학교에서 규정한 주차료 납부를 포함한다. (주차료: 1,000원/2시간, 2,000원/4시간, 3,000원/당일, 30,000원/월)

2.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의 증액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나. 물량산출 및 단가산정 잘못은 인정치 않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음

다. 제공된 도면을 참고하되, 반드시 현장실측 및 현장여건을 확인 후 견적해야 함. 실측오류 및 현장 여건 확인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없음.

라. 실내기, 실외기 위치가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음. (사전 현장확인 반드시 진행 할 것)

3. 지급자재

- 가.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시설비는 업체 부담)
- 나. 상기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포함하여 견적
- 다. 기타 작업발판 등 모든 가설자재는 지급치 않으며 설치 및 해체, 정리는 일체 시공자 부담임.

4. 질의응답

- 가. 입찰 관련 : 구매관재팀 이나경(031-219-2067)
- 나. 공사 관련 : 시설팀 허철민(031-219-2081)
 - 질의 :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차 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 hcm3843@ajou.ac.kr
 - 응답 : 전자입찰 2일전 18:00 까지 이메일로 회신
 -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방문 2일전까지 시설팀 허철민(031-219-2081)으로 연락

※ 첨부자료

1. 간접비 정산 확인서
2. 설계도면 - 별도 파일로 첨부

확 인 서

- 업체명 :
- 이 름 :
- 부서 및 직책 :
- 사무실 연락처 :
- 핸드폰 번호 :

“아주대학교 원천관,동관,화공실험동,성호관 냉난방설비(EHP) 개선공사” 진행완료 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명기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발주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기존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미만으로 집행될 경우 미지급하며,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 증빙서류 :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재)

2. 안전관리비

- 적용기준 :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증빙서류
 - 1)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사진
 - 2) 안전·보건관리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한 경우만 인정
 - 3) 물품구매 :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사진, 설치 위치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현장배경 물품 반입 사진, 근로자 실착용사진(지급 물량 = 근로자 사진), 지급대장 등
 - 안전시설비: 설치 위치 표기 도면, 수량산출, 사진 등
- 인정불가
 -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1.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
 - 안전시설 및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인정불가
 - 신호수 : 현장 외부에서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

- 안전시설 :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웬스 및 분진망 등

3. 환경보전비

- 적용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 증빙서류
 -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사진
 - 물품구매 :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 인정불가
 - 현장청소 인건비,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단순 청소용품 : 마대, 마스크/장갑,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이, 삽 등) - EGI 펜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환경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2024. .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1. 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p>	<p>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p> <p>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p> <p>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p> <p>3)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p> <p>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p> <p>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p> <p style="margin-left: 20px;">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u>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u></p> <p style="margin-left: 20px;">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p> <p>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p> <p>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p> <p>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p> <p>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2. 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p>	<p>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p> <p>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p>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 드럼 등 <p>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p>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p> <p>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p> <p>1) 작업복, 방한복, <u>방한장갑</u>, 면장갑, 코팅장갑 등</p> <p>※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p> <p>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p>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p>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p> <p>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p> <p>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p> <p>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p> <p>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p> <p>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p> <p>※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p>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p>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p> <p>※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p> <p>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p> <p>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p> <p>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p>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 구독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p>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p>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p>
<p>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p>	<p>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p>※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 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p> <p>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p> <p>※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p> <p>3)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p> <p>※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p> <p>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p> <p>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p> <p>※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p> <p>나. 과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p> <p>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p> <p>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p>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p>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p> <p>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p>